

수용재결 열람 공고

성남시 고시 제2019-130호(2019.3.25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「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」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3조제2항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이 있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- 위치 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912번지 일원(사업면적 : 67,233.7㎡)
- 사업시행자 :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
-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2023년 12월까지

2. 열람 및 의견제출

- 대상자 : 별지 참조
- 열람장소 : 성남시청 도시정비과(중원구 성남대로 997 서관 5층) ☎031-729-4472
- 열람내용 :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(열람장소 비치)
- 열람기간 : 2021. 6. 14 ~ 2021. 6. 28(열람기간 중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)
- 의견제출 방법 : 열람장소에 직접 방문 서면 제출하시거나 우편송부
(열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)

3. 참고사항

-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재결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시행자(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☎031-735-2467,246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. 6. 14.

성 남 시 장

